

서울특별시마포구생활체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5. 1. 27.
행정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5년 1월 12일 마포구청장
- 나. 회부일자 : 2015년 1월 16일
- 다. 상정일자 : 제193회 임시회 제5차 행정건설위원회(2015년 1월 27일)
상정, 심사,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생활체육과장 이흥주

가. 제안이유

- 「마포구민의 건강증진과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장애인·청소년·학교·직장 생활체육에 대한 지원 규정을 마련하고, 건전한 체육단체 육성을 위한 지원 및 감독에 관한 규정을 마련코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장애인·유아·청소년·노인의 생활체육 육성 및 지원(안 제3조제2항제7호)
- 학교·직장 생활체육 육성 및 지원(안 제3조제2항제8호)
-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지도·감독 규정 신설(안 제4조)
 - 보조 사업을 수행하는 자로 하여금 보조금 집행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고 시정명령, 보조금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
-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정비

3. 검토보고 (전문위원 김은모)

- 동 조례안은 마포구민의 체력을 증진하고 지역사회 통합을 위한 체육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장애인체육, 학교체육, 직장체육에 대한 지원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구민의 생활체육 대상에서 소외되기 쉬운 취약계층인 장애인·유아·청소년·노인을 추가하였고, 학교·직장에 대한 생활체육 지원근거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 또한 동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생활체육협의회 보조금 집행 및 운영의 투명성 제고 제도개선 방안” 권고사항(2008.12월)에 따라, 보조금의 적절한 집행, 집행 사항 보고, 감독상 필요한 지시사항, 시정명령 및 보조금 환수 등에 대한 지도·감독 규정을 신설하여 투명한 회계절차를 거칠 수 있도록 하였음.
- 검토의견으로는 상위법인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체육 진흥 시책과 권장)에 저촉됨이 없고, 최근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으로 생활체육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이와 관련된 예산지원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생활체육협의회의 지원근거 마련과 투명한 회계 관리시스템 및 지도·감독 규정 등을 마련하라는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방안은 시행시기가 늦었지만 구민의 건강증진과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이라도 시행함은 마땅하다고 사료되며 향후 생활체육협의회 보조금 집행 및 운영의 투명성 제고 향상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됨.
- 동 조례안은 2014. 11. 13. ~ 12. 3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우리 구 조례규칙심의회 심의를 거쳐 조례 제명 등 각종 용어를 한글맞춤법의 띄어쓰기 및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상 용어를 정비하여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됨.
다만, 지방보조금의 지급대상, 경비의 지원, 지도·감독 등 지방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현행 「서울특별시 마포구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적용하되, 향후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개정·시행되면 새로 개정된 조례에 따라야 할 것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요지 : 없음

8. 기타사항 : 없음